

의안번호	제 517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0년 9월 15일

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517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0년 9월 15일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- 가.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 완성과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과 지원을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「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」 제35조,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‘충청북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’ 를 구성한다.
- 나. 동 위원회는 균형발전(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의 실현), 정부예산 확보, 투자유치, 정책개발 등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한 조정과 지원, 대외협력 활동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를 점검·지원한다.
- 다.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,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하되,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.
- 라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제안이유

- 가. 국가 및 도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 등을 통한 불균형 해소와 정부예산 확보, 정책개발, 투자유치 활동 등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.
- 나.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회 차원의 대응과 정부예산 확보 등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.
- 다. 이에 실질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3. 관련 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- 「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」 제35조, 제38조, 제39조

관련법규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56조(특별위원회의 설치)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기본조례

제35조(특별위원회)① 의회는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. 다만,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
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

제39조(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)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.

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.

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.

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. 다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.

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